#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2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김동아·전현희·박정현

문진석 • 양문석 • 이정문

김영호 • 윤준병 • 김영배

노종면 • 허성무 • 김준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 법률 제 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위탁기업이 제21조"를 "위탁기업이 제21조(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를 "제21조(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5항까지에"로 한다.
  - ③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 그 위탁기업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7조(수탁 · 위탁기업 간 불공 제27조(수탁 · 위탁기업 간 불공 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 정거래행위 개선) ① -----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수탁 위탁거래 과정 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 ---위탁기업이 제21조(제21조 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납품대금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 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

무소 · 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 1. 제21조(제21조제1항제4호에 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 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 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신 설>


-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u>이행 여부에</u> 관한 사항을 포 함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과태료)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 탁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위 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 그

## <u>③</u>· <u>④</u> (생 략)

⑤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위탁기업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⑥</u> <u>제5항까지에</u>